

의안 번호	1837	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11. 11.(목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1. 11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7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및 국토교통부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토교통부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처리기한 변경(안 제6조)
- 서면심의 수당 단가 기준 마련(안 제6조의2)
-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)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맞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사항 변경(안 제10조)
-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, 잘못된 문장 성분과 불필요한 조문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113조의3
-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 제2장
-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2조의4
-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의 처리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,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검토한 바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

제113조의2(회의록의 공개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·장소·안건·내용·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- 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**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.
-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”란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」

제2장 운영회 운영

9. 처리기간

2-9-1.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·군·구에서 시·도에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,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.

2-9-2. 시·군·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

2-9-3.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협의의견을 신속히 제시처리(관례적인 협의의견 제시 지양)

2-9-4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,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.

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」

제52조(회의의 비공개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·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심의 종결 후 30

일을 말한다. 다만,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 시작 후 6개월을 말한다.

제58조(권한위임)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한다. 다만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·11· 5, 2014·6·30, 2020. 10. 29.>

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6·12·29>

③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·11· 5, 2014·6·30, 2020. 10. 29.>